



국정감사 (정보통신부 2007. 10. 18)

1. 3G 휴대전화(영상폰)를 이용한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대책
2. ‘대리운전’ 업체의 고객 연락처 보유는 무기한
3. 음란, 스팸,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등 ‘정통망법’ 위반 관련 수사의뢰 후 “나 몰라라” 하는 정통부
4. 경쟁력 없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증’
5.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 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감청보호법’
6. 정통부와 이통사 손잡은 생색내기, 소비자는 장님?
7. ETRI의 ‘장애인’ 을 대상으로 2년 연속 벌인 추악한 사기극
 - 이전된 기술 22개 중 고작 4개만 상용화!
 - 기술 개발 예산 투입 예산 약 1,957억 Vs. 상용화에 따른 기술로 수입은 예산의 0.1%
 - 기술로는 상용화 여부와 상관없이 기술 개발 연구원 인센티브로 39% 지급
 - 기술 개발 투입 예산, 보건복지부 08년 장애인 복지 예산의 무려 28.7%
8. 절차 무시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멋대로 고시한 우편요금 감액을 !!
 - 이용자는 1,000억원 더 ‘부담’ 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더 ‘이익’ 내고
 - 우편요금 감액제도 개편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최소 2% ~ 최대 15%까지 ‘이득’
Vs. 이용자는 최소 2% ~ 최대 15%까지 ‘손해’
9. 새주소 시행 된 후 6개월간 우정사업본부 자체 발송 ‘새주소’ 우편물, 고작 9.2%

3G 휴대전화(영상폰)를 이용한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 대책

- 영상통화 기술을 이용하여 ‘On Line’과 ‘Off Line’이 결합된 신종 ‘모바일 성 매매업’이 등장할 가능성 존재
 - 특히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 ↳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보호진흥원)의 신속한 대책마련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 WCDMA 기술을 이용한 3G 휴대전화, 즉 ‘영상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 영상통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가 범람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카메라가 부착된 ‘2G 폰’으로도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여 발송할 수 있으므로 사진, 동영상 형태의 ‘스팸’이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WCDMA 기술을 이용한 ‘영상통화’ 방식으로 ‘음란 광고물’을 발송하고 성매매와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함
 - 현재 비싼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되는 ‘폰팅’은 음성만 가능하지만 3G 영상폰이 보편화되면 ‘영상 폰팅’ 산업이 범람할 우려가 있음

<‘유비쿼터스 섹스 산업’ 사업 예상 방식>

방식①: SMS(스팸) 발송 → 통화연결 →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 연결(UCC 등)

- 특징: 현재 2G 폰으로도 가능한 방식이며,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데이터 통화료’를 이통사와 불법 사업자가 나누는 방식

방식②: ‘영상스팸’ 발송 → 회신번호로 통화연결 → 통화 후 성매매

- 특징: “On Line”과 “Off Line”이 결합된 신종 성매매 형태로서(‘Mobile 성매매’) Mobile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짐으로써 단속, 적발이 곤란함

※ 성매매 광고 증거 확보와 성매매 여성 검거가 이뤄져야 하나 이 경우 ‘대포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방식③: 스팸 발송(SMS, 또는 영상메시지) → 회신번호로 통화 연결 →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한 송금 → ‘영상 폰팅’

- 특징: “On Line”을 통한 “음란 공연”

- ‘영상통화’를 통한 음란 광고물 발송에 대한 처벌은 「정통방법」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더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규정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수준이 낮음
- 위의 ‘영상통화’ 부작용의 세 가지 유형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현행 법률에 없으므로 ‘영상통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해야 함
-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물이 ‘영상통화’를 통해 범람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불법 유해정보 차단 등 관련 기술개발이 필요함
- ‘영상폰’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으나,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고(2007년 8월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 수 4250만 명 중 WCDMA 3G 가입자 약 300만 명으로 약 7.05%), ‘영상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아 ‘영상통화’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낮음
- 일부에서는 ‘영상통화’ 요금이 ‘음성통화’ 요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상통화’를 이용한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나, 이는 기술발전 속도에 버금가는 불법, 탈법 행위의 발생 속도를 간과하고 있으며 기술발전 및 이통사간 경쟁으로 휴대전화 요금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잘못된 현실인식이라고 볼 수 있음
 - ※ 현재 “SHOW(KTF)”“T-LIVE(SKT)”의 요금은 10초당 30원으로 음성통화료의 1.5배 수준이며, 3G ‘영상폰’의 보급을 위해 이통사는 “월 100분 무료통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SKT의 “망내할인”, KTF의 “망내외 할인” 요금제도가 시행되면 ‘영상통화’ 요금도 대폭 하락할 것이 자명함

☞ ‘영상통화’의 부작용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업체의 고객 연락처 보유는 무기한

- 짜증나는 ‘대리운전’ 스팸이 계속 오는 이유는 고객 정보(연락처) 보유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정통방법」의 허점 때문
 - ↳ 「정통방법」(제50조 ②항 1호)을 개정하여 ‘대리운전 업체’의 고객(연락처) 보유기간을 제한해야

- 휴대전화 문자 또는 통화를 통한 대리운전 스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 2006년 상반기 ~ 2007년 상반기 스팸수신량 조사결과 >

(단위 : 통/일, %는 구성비)

구 분	대출/금융	성 인	대리운전	일 반*	계
‘07. 상반기	0.20(37.0%)	0.13(24.0%)	0.11(20.0%)	0.1(18.5%)	0.54(100%)
‘06. 하반기	0.19(40.0%)	0.11(24.0%)	0.05(10.6%)	0.12(25.5%)	0.47(100%)
‘06. 상반기	0.57(57.6%)	0.13(13.1%)	0.07(7.1%)	0.22(22.2%)	0.99(100%)

※ 일반스팸: 고객유치, 내용확인 불가한 원링 등

※ 출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7.10.15.)

- 대리운전 스팸은 전체 스팸 중 약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대출/금융”, “성인” 스팸에 비해 전체 스팸 수신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리운전 스팸의 경우, 전화번호가 사업의 핵심정보이므로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이 가능함
- 그러나 관련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방법」)의 단서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연락처를 수집하고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하고 있어 적발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현행 「정통방법」 제50조②항에는 “Opt-In”제도(광고성 정보 발송시 수신자 사전동의제도)의 예외조항이 명시돼 있음

※ 「정통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 즉 대리운전의 경우, 한 번이라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이용자의 연락처가 대리운전 업체의 서버에 저장되며, 이후 대리운전 업체는 저장된 연락처에 “합법적으로” 대리운전 광고를 무제한 발송할 수 있음
-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대리운전 스팸 발송을 “근절”할 수 있으나, 이 조항은 대리운전 외의 사업에도 적용되므로 단서조항 삭제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현실적 대안으로서 대리운전 업체가 “합법적으로” 확보한 고객의 연락처 보유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즉 현행 「정통망법」 제50조②항 1호를 개정하여 고객 연락처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제한함으로써 기한이 지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스팸을 무기한으로 발송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통망법」 소관부처의 장관으로서 이런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는가?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 기
바
람

음란, 스팸,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등 「정통망법」 위반 관련 수사의뢰 후 “나 몰라라”하는 정통부

- 수사의뢰 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 파악은 물론 관련 통계도 없어
 - 법 집행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미비로 처벌규정의 실효성 취약
 - 지극히 미미한 유죄판결률로 ‘과태료’보다 가벼운 ‘벌금’
- ☞ 정통부, 경찰, 검찰, 법원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수사의뢰 후) 관리 강화(모니터링, 기관간 Hot-Line 구축 등)
- 스팸발송,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위반 등은 「정통망법」 관련 조항에 의해 1천만 원 ~ 5천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그러나, 정통부(KISA 포함)는 경찰에 수사의뢰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사의뢰 대상 개인 또는 업체에 대한 법적 처분의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통부가 직접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수사의뢰 대상자들이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내사종결, 불기소 처분 등을 받아 결과적으로 ‘더 가벼운’ 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함
 - 2005년 ~ 2007년 「정통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는 각각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 관련 28건, 스팸 21,666건(※ 건수과다로 2006년 ~ 2007년 7월까지의 통계만 파악하여 제출),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19건임
 - ※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 관련 수사의뢰는 2005년 ~ 2006년까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하였으나 2007년 5월 「정통망법」 개정으로 「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의거하여 8건을 수사의뢰
 - 이 중 검찰 기소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2005년 ~ 2007년 7월까지 단 1건 (2006년,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에 불과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음
 - ※ 스팸 및 음란 정보 관련 유죄판결 자료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회신 지연으로 통계자료 미제출(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 정보윤리팀)

- 이와 같이 유죄 판결률이 미미한 근본적인 이유는 ①유관기관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상호이해 부족, ②「정통망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통된 처리지침(매뉴얼) 및 협의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임

① 유관기관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상호이해 부족

- 정통부와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건을 접수, 파악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있으나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정통부와 경찰간 이해 부족으로 경찰에서 ‘내사종결’하는 사례가 대다수임

- 경찰은 정통부가 ‘스팸 트랩’*을 통해 적발된 사건들에 대한 기본적 수사정보(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등)가 누락된 채 수사의뢰하기 때문에 신원파악이 어려운 대다수의 사건에 대해 ‘내사종결’ 처리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통부는 범법자의 ‘신원’을 파악 하는 것부터 경찰의 임무라고 주장하고 있음

(2007년부터는 KISA에서 스팸발송 업체정보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2007년 1/4분기에 신고한 35건 중 3건을 신속히 처리함(불구속 기소)

-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는 극소수의 사건도 검찰 조사단계에서 절차상의 흠결 등이 발견될 경우 불기소 처분함. 절차상의 흠결 외에 스팸, 개인정보 보호 등 「정통망법」에 대한 기술적, 규범적 인식에 대한 차이 및 소관업무 중요도(※ 검찰의 첨단범죄수사는 첨단기법의 금융범죄 및 첨단기술 유출범죄 등을 담당하고 있어 스팸,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 「정통망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집중할 수 없는 여건임) 등도 「정통망법」 위반 사건의 철저한 단속을 가로막는 요인임

② 「정통망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통된 처리지침(매뉴얼) 및 협의체계 부재

- 「정통망법」 위반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통된 처리지침(매뉴얼)과 협의체계가 필요하나, 사안별로 일부 협력이 추진되고 있을 뿐, 현재까지 단속과 사법처리 전반에 걸친 일관되고 체계적인 협조체계가 부재함

○ 따라서, 스팸 근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간의 전문성을 공유하여 범범행위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정통망법」 위반사건, 즉 음란, 스팸,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등 각각의 사례별 대응 ‘매뉴얼’을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작하고 이에 따른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 장관은 「정통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의회 후 최종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정보보호진흥원과 정통부가 위반사건을 단속하여 수사의회를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건들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내사종결 처리되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들조차 기소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 장관은 ‘스팸 근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 장관은 지난 8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정통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즉 현행 과태료 수준의 처벌을 ‘형벌’ 수준으로 강화하고 ‘과징금’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과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경쟁력 없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증’

- 낮은 인지도와 미미한 자격취득 인센티브로 정보보호 분야 외국자격증(CISA, CISSP)에 비해 경쟁력 취약

☞ 민간 이양 방안을 포함한 향후 운영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현행 「자격기본법」에, 자격증 인 증은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소관으로, 감독관리는 해당 주무부처가 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IT 분야의 경우, 타 자격분야에 비해 전문성이 높고, 자격제도 시행의 역사가 길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관리 일원화’라는 명분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정보통신 분야도 산업의 일부이지만 산자부가 관장하지 않고 정통부가 주무부처인 이유는 IT 분야의 특성과 정책적 목적이 우선하기 때문임)
- ‘정보보호전문가(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는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기술 및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위한 자격제도로써 2001년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주관하고 한국정보통신대학원(ICU)이 시행해 오다 2006년 ICU와 한국전파진흥원(KORPA)간의 협약체결로 자격제도를 담당하던 ICU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이 KORPA에 통합됨에 따라 현재 KORPA가 시행하고 있음
- ‘SIS’는 공인민간자격증이나 정통부의 예산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응시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국가자격증으로 볼 수 있음

<SIS 시행관련 예산 집행 체계 및 최근 3년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예 산	사업비	124,000	111,000	100,000
	수수료 수입	37,090	46,610	69,480
	합 계	161,090	157,610	169,480
집 행	위탁비	40,000	66,000	72,000
	인건비	7,314	7,682	7,682
	운영비	46,312	52,317	63,282
	연구비	20,000	-	-
	합 계	113,626	125,999	142,964
잔 액		47,464	31,611	26,516

- ※ 사업비: 정통부 사업예산
- ※ 수수료 수입: 자격취득지원자의 응시료
- ※ 위탁비: 전국 시험장 장소 임차료, 감독비용, 시험지 인쇄비 등
- ※ 잔액: 국고 반납
- ※ 출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7.10.2.)

- SIS가 공인된 2004년 이후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매년 지원금액이 감소하고 있음

※ 2008년 예산액: 9천만 원

- 정통부는 ‘SIS’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수수료 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가 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이양을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감리사’ 사례를 보면 납득되지 않는 설명임. ‘정보시스템 감리사’도 ‘SIS’와 동일한 2001년에 시작했으나, 초기 단계부터 별도의 정부 예산지원 없이 응시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며 2007년 예산규모는 1억 7천만 원임

- 자격의 내용과 경쟁 자격증 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SIS’와 ‘정보시스템 감리사’를 단순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자격증의 정책적 필요성 및 산하기관을 통한 수행방식 등 사업의 골자는 큰 차이가 없음

☞ 정통부의 산하기관들이 같은 시기에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는 두개의 자격증이 하나(‘정보시스템 감리사’)는 처음부터 예산지원 없이 독립적인 수입·지출 구조로 운영돼 오고 다른 하나(‘SIS’)는 지금까지 예산지원이 필요한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SIS’의 경우 정부 예산지원으로 사업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SIS’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자격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CISA, CISSP 등 외국자격증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자구노력’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SIS(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증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즉 현행 정부 예산지원과 민간 위탁에 의한 운영방식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순수하게 수수료에 의한 수입만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단계적 민간이양을 검토하고 있다면 각 단계설정의 대략적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람

- SIS와 유사한 정보보호 분야 외국 자격증인 CISA와 CISSP를 비교하면 SIS의 취약점이 두드러짐

- 정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SIS와 CISA의 합격률은 비슷해지고 있으나 응시자 규모에서 보면 SIS는 CISA의 약 1/3수준임(2006년 SIS 1급 220명, CISA 615명)
- 정통부는 “현재 SIS 자격증은 국외 자격증(CISA, CISSP)과 비교해서 국제적인 공신력, 인지도 및 자격관리체계 등에서 열세인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으며(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10.2.), 이런 상황은 시장에서의 평가와 일치함

<정보보호 분야 주요 사업자별 CISA, CISSP, SIS 자격증 보유 현황>

기업명	직원수	SIS 1급	CISA	CISSP	합계	비고
1. 시큐아이닷컴	120	7	18	26	51	채용시우대 자격증취득시 응시료 지원
2. 인젠시큐리티서비스	50	5	5	17	27	채용시 우대 자격증 응시비용 지원
3. 인포섹	173	9	34	42	85	CISA, CISSP응시료지원
4. 한영회계법인	1,013	0	21	8	29	서류심사가점 CISA만 응시료지원
5. KT(정보보호본부)	41	0	3	9	12	응시료 지원
6. 안철수연구소	396	5	6	18	29	채용시 우대사항 취득시 수검+유지비용 지원
7. 이글루시큐리티	98	0	22	37	59	응시료 지원 자격증 수당 지급
8. 한국전산감리원	52	1	17	4	22	학원수강료, 수검비용지원
9. 한국IT감리컨설팅	40	0	9	3	12	CISA, CISSP 채용시 가점
10. CAS	49	0	26	4	30	자격증 취득시 비용 지원
11. A3시큐리티서비스	48	5	11	7	23	자격증 응시료 지원
12. 인젠	94	7	12	8	27	채용시 가점부여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통해 파악한 자료임(2007.9월말 조사)

※ 출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7.10.2.)

- SIS 자격증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직원 채용시 SIS 자격 취득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정통방법」 등에 규정된 정보보호감리원 및 정보공유분석센터 기술인력 등의 자격요건으로 SIS자격증을 인정하고 있고, 정보통신 관련분야 언론 광고 및 대학, 유관협회 등에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SIS 홍보를 위한 홍보예산도 턱없이 부족하지만(2005년 550만원, 2006년 650만원, 2007년 500만원) 홍보활동 강화만이 인지도와 응시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없음
- 즉 시장에서 SIS자격증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통부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정부 발주 사업 등에 SIS 자격증을 다수 보유한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체도를 도입한다면 SIS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 ‘SIS’ 자격증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 중장기적으로 민간이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인지도와 경쟁력으로는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적자가 누적될 경우 사업의 지속이 어려울 것은 명약관화할 것임. 따라서 민간이양 준비를 위해서라도 ‘SIS’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감청보호법’

- 감청장비 보유, 감청사실 통지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전가
 - ↳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
 - ↳ 감청 대상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해야 함
 - ↳ 감청설비 이전 또는 폐기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
 - ↳ 감청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사후 구제제도를 도입해야 함
-
- 2007년도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623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528건에 비해 18.0% 증가함
 - 통신수단별로는 전년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325건에서 303건으로 6.8% 감소했으나, 인터넷은 203건에서 320건으로 57.6% 증가했음. 이는 국민들이 유선전화보다는 이동전화, 인터넷 등을 주된 통신수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감청 통신수단도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임
 -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도 증가추세임
 - 2007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92,735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72,022건에 비해 28.8%가 증가했음
 - 통신수단별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도 감청의 경우와 같이 전년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54.9%, 이동전화는 33.5%, 인터넷은 5.3%가 증가했음
 - 정통부의 보도자료(2007.9.14)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밀 보호’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 ① 누가 감청설비를 운용할 것인가?
- 지난 6월 22일 본회의에 부의된 ‘법사위 대안’의 핵심은 감청설비 보유 및 운용 주체를 정보·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서 통신사업자로 변경한 것임
 - ‘법사위 대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장비 구비의무를 위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장비 또는 시설은 정보·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직접 운용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자의적 이용을 제한하자는 취지가 있으나, 영세 사업자까지 포함하면 10,000개가 넘는 전기통신사업자 모두에게 감청설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국고가 낭비될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감청설비 운용에 따르는 법적, 관리적 책임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국가기관은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법사위 대안’이 규정하고 있는 감청장비 설치의무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에서 언급했던 국가기관 보유한 감청설비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 내지 통보하게 한 내용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② 감청사실 통지의 의무를 누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법사위 대안’은 정보·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만 통지하게 하고 감청 대상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제외했음. ‘법사위 대안’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은 감청설비를 보유하지 못하므로 정보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통비법」의 입법취지인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지제도’가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본 위원이 2005년 11월 18일 대표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에는 감청 대상자에 대한 통지의 의무를 국가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양자에게 부과하는 통지제도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 본 위원이 지적한 ‘통지제도’의 강화, 즉 국가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공히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사실을 통지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③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감청설비의 이전·폐기의 확인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 본 위원이 2007년 6월 4일 대표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감청설비의 이전·폐기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법사위 대안’이 통과되면 정보·수사기관은 더 이상 직접 감청을 하지 못하므로 현재 정보·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이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감청설비를 모두 폐기해야 함. 그러나 이런 내용은 ‘법사위 대안’의 본문은 물론, 부칙에서도 찾을 수 없음
- 즉 현재 정보·수사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 대안’이 통과되면 정보·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고, 만약 정보·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설비를 폐기하지 않았다면 이 설비를 활용하여 불법적인 감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법사위 대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보·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의 직접 감청 금지 제도가 최소한의 설득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설비의 폐기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
- ☞ 현재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 처리 문제에 대해 ‘법사위 대안’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잘못된 감청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 통신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 등 사후 구제제도를 도입해야 함

- 정보·수사기관 및 정보통신사업자의 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또는 정보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 등 사후 구제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령에 따라 감청을 엄격히 통제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제도가 도입된다면 정보·수사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국민들의 감청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 장관은 정보·수사기관 등 국가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의 오류로 피해를 입은 감청 대상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 사후구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통부와 이통사 손잡은 생색내기, 소비자는 장님?

- ‘망내 통화료 할인’ 제도에 따라 SK텔레콤은 월정액 2500원을 더 내면 자사 가입자간 통화료를 50% 할인해주는 ‘망내할인’ 요금상품을 17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KTF와 LG텔레콤도 11월 1일부터 ‘망내할인’ 요금제를 실시하기로 함
- 그러나 실제 비교해본 결과 월 300분 이용시 할인 금액은 SK텔레콤이 7040원, KTF(휴대폰간 통화료 30% 할인 요금제 이용시)이 5373원, LG텔레콤이 4952원 수준임
- ‘망내 할인’으로 요금이 내려가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이통사들의 수입감소는 상쇄될 뿐만 아니라, 기본료 인상을 통해 SKT의 경우 연간 5~8천억원, 이통3사 전체 가입자로는 연간 1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됨
- ☞ ‘망내 할인’ 제도가 근본적인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피하고 기본료 인상과 통화량 증가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으려는 이통사들의 ‘생색내기’이자 ‘담합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휴대전화요금 인하의 올바른 방향은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① 기본료 인하와 ② 10초당 요금인하, ③ 문자 메시지 요금 할인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동전화 요금인하가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 SKT는 9월 19일 정통부에 ‘망내 할인’ 제도 인가신청을 했으나, 정통부는 거의 한 달 후인 10월 16일에 인가함. 한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사유는 무엇인가?
- ☞ SKT가 신청당시의 ‘망내 할인’ 제도의 내용과 정통부가 인가한 내용이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다면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TRI의 ‘장애인’ 을 대상으로 2년 연속 벌인 추악한 사기극

□ 들어 가 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이하 ETRI)은 ▲정보, 통신, 전자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개발·보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근거, 지난 1976년 설립된 기관임.
- ETRI는 2007년 『ETRI 2007 IT Technology Report - ETRI 르네상스를 꿈꾸다』 라는 ETRI를 소개하는 홍보 책자를 통해 ‘ETRI’는 ‘인간 중심 IT융합선도기술 선도기관(A leader of Human-Oriented IT Convergence)’으로 ‘▲융합형 R&D 역량 일류화 ▲선도형 Global 역량 강화 ▲시장 창출형 IPR 상용화 확대’를 통해 ‘단기국민소득 3만불과 장기 5만불 달성을 위한 성장엔진을 마련’하겠다고 비전을 밝히고 있음.
- 정부는 지난 1981년부터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 올해(2007년)로 27회째를 맞고 있음.
- 본 위원은 몇 년째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벌인 ETRI의 추악한 사기극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자 함.
- ETRI는 지난 2007년 4월, 『제2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전 언론과 국민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on/off-line을 통해 배포한 바 있으며, 이는 각종 언론매체를 화려하게 장식했음.
- 당시 ETRI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ETRI, 장애인을 위한 IT도우미 앞장’ ‘첨단 IT기술 개발을 통한 장애인 복지 정보통신 구현’ ‘로봇, RFID, 차세대PC 등 정보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ETRI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배포한 보도자료는 2007년에만 그치지 않고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2005년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2005년 4월 18일 배포한 것으로 나타남. 즉, 거의 비슷한 내용을 2005년, 2007년 재탕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임.

- 당시 ETRI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ETRI,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 ‘IT기술개발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보통신 구현 노력’ ‘중증·색각·시각·청각장애인 컴퓨터 사용 큰 도움’이라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게 ETRI의 IT 기술이 어떻게 편리한 세상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알아보자’며 ETRI가 개발한 각각의 기술에 대한 친절한 설명까지 잊지 않고 있었음.
- 본 위원은 그간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고 해서 관심 있게 이러한 ETRI의 보도자료와 이를 보도한 각종 언론매체를 접하며 뿌듯한 마음마저 있었음.
- 각종 언론매체는 ETRI의 보도자료를 받아서 쓴 기사에서 ‘ETRI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연구 성과물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물이 ‘장애인의 무지갯빛 희망’으로 ‘장애인 삶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음.
- 본 위원은, 그렇다면 ‘ETRI’라는 정부출연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해서 개발된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ETRI가 지난 2년 동안(2005년, 2007년) 4월 20일 ‘장애인 날’만 되면 그토록 ‘ETRI의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이 ▲정보격차를 해소시키고 ▲장애인 복지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도자료를 2년이나 재탕해 가면서 밝히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입법부 차원에서 예산상 혹은 정책상 도움 될 것은 없는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했음.
- 그러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내용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음.

□ 문제점 & 질 의

1. ETRI의 ‘장애인’ 을 위한 기술, 이전된 기술 22개 중 고작 4개만 상용화!!

- 본 위원실에서는 우선 ETRI가 2007년 『제27회 장애인의 날』 을 맞이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명시된 ‘ETRI의 지원으로 개발된 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바탕으로 ▲투입된 예산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납부 및 사용 현황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 ‘ETRI의 지원으로 개발된 장애인을 위한 기술’은 총 16개 사업에서 도출된 기술로, 총 23개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남.
- 총 23개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만 1,957억 4,300만원으로, 이 중 ▲정부 부담이 1,685억 5,300만원 ▲업체 부담이 271억 9,00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남.

< 표-1 > ETRI의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 : 투입 예산 현황

구 분	사업 수	개발된 기술 수	투 입 예 산		
			정 부	업 체	합 계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	16개 사업	23개 기술	1,685억 5,300만원	271억 9,000만원	1,957억 4,300만원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시장에서는 개발해 봤자 돈이 안 되는 ‘장애인 대상 기술’인 관계로 모두들 외면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 IT 기술 분야에 있어서 타 부처보다 특화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술개발에 예산을 지원한 ‘정통부, 과기부, ETRI’가 ‘업체’와 손을 맞잡고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을 약 1,957억원을 들여 해 오고 있는 것임.
- 기술 개발을 하는데 있어 소요된 경비를 정부와 업체가 매칭 펀드(matching fund)로 하던지 혹은 전액 정부가 부담을 하던지 ‘기술’만 개발된다면,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제품화) 되어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ETRI가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ETRI’는 ‘장애인을 위한 IT도우미’임이 확실할 것임.
- 그러나 총 1,957억 4,300만원이 투입된 ‘장애인을 위해서 개발된 23개 기술’ 중, 업체로의 기술 이전은, 1개 기술(‘이 물기를 이용한 근전도 기반의 입력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22개 기술’이 기술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상용화(제품화)’ 된 것은 ‘단 4개 기술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표-2 > ERTI의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 : 상용화된 기술 현황

구 분	사업 수	개발된 기술 수	기술 이전이 된 기술 수	상용화된 기술 수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	16개 사업	23개 기술	22개 기술	4개 (18.1%)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예산 투입 후 → 기술이 개발되어 → 기술 이전을 원하는 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고 →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가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제품화)한 실적이 ‘이전된 22개 기술’ 중 고작 ‘4개 기술’이라는 점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람.
 - 본 위원은 기술 이전이 되었다고 해서, ETRI로부터 기술 이전 받을 때와 막상 업체가 해당 기술을 상용화 할 때, 시장 환경의 변화 그리고 업체의 이러저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기술 이전을 받은 기술’ ‘모두’ 상용화 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특히 그 기술이 ‘장애인’과 관련된 기술일 경우 더더욱 그 사정은 열악할 것으로 생각됨.
- * 참고자료
- 기술 이전 이후, 이전 받은 기술의 상용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IITA(정보통신연구진흥원)는 ‘기술 이전 이후 상용화가 되지 않는 기술’에 대해 ‘추가’로 ‘지원금’과 ‘기술개발 인력’을 제공해 → 해당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켜 사장되는 기술이 없도록 하는 ‘공공 R&D 추가기술개발지원 사업’이 진행하고 있음.
- 이러저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ETRI가 ‘ETRI,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이라는 보도자료를 손수 만들어 현란한 언론플레이를 하셨기 때문임.
 - 장관은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에 예산을 지원해서 몇 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보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아울러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수치(‘이전된 22개 기술’ 중 고작 ‘4개 기술’만이 상용화 됨)와 ETRI가 밝히고 있는 ‘ETRI,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이라는 보도자료의 제목과 그 내용의 상관관계에 대해 장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ETRI의 '장애인' 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입액 약 1,957억

Vs. 상용화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예산의 0.1%(약 1억 9,983만원)

- 본 위원은 앞에서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에서, 개발된 기술이 총 23건이고 이 중 이전이 된 기술은 22건이라 말씀드린 바 있음.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8조에 근거, 관리기관(즉, ETRI)은 기술 이전을 받아 활용하는 자(기술이전을 받은 업체, 기관 등)로부터 '기술료'를 징수 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정에 근거, 관리기관인 ETRI가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다만 개발된 기술이 장애인 대상 기술이라 그 기술료는 다른 사업의 기술료보다 적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본 위원은 시장성이 크지 않는 기술과 관련된 기술 이전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원하는 '업체간 경쟁'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음. 그러다 보니 ▲기술 이전을 하지 못한 기술도 있고(개발된 23개 기술 중 1개 기술이 기술 이전 되지 못함) ▲일부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단 한 푼도 받지 않는(0원) '무상 기술 이전'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본 의원은 납부된 기술료의 많고 적음에 대해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음. 다만 이전이 된 기술 22건으로부터 징수 받은 기술료 34억 7,315만 5,000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함.
- 그것은 ▲총 22건 기술 이전을 했지만, 단 4건만이 상용화(제품화)가 됐기 때문이고 ▲ETRI가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첨단 기술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정보통신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 예산만 1,957억 4,300만원이기 때문임.
-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투입예산(약 1,957억원)' 대비 '기술료 수입(약 34억)'은 투입 예산의 '1.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 문제는 '기술 이전 받은 업체가 납부한 기술료 34억 7,315만 5,000원'이,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가 매출액이 있어서 즉, 해당 기술을 이전 받아 상용화 한 제품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분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상 기술료(매출정률기술료, Running Royalty)' 보다는, 기술을 이전 받을 때 기술을 이전 받은 업체가 납부한 '착수 기본료(Initial Payment)'가, 납부한 기술료 대부분(94.2%)을 차지한다는 것임.

< 표-3 > ERTI의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 : 기술료 납부 현황

구 분	이전된 기술 수	기술료 납부액 : 34억 7,315만 5,000원	
		착수 기본료(Initial Payment)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	22개	32억 7,331만 6,000원 (94.2%)	1억 9,983만 9,000원 (5.8%)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더욱 문제는 약 1,9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용화에 따른 기술료 수입(즉, 경상 기술료 수입)'만 보면 투입예산의 0.1%인 약 1억 9,983만원이라는 것인 바, 장관은 '투입예산' 대비 '기술료'에 대해 그리고 '투입예산' 대비 납부된 '경상 기술료'에 대해 장관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그나마 받은 기술료는 상용화 여부와 상관없이 기술 개발 연구원 인센티브로 39% 지급

- 기술을 이전 받은 업체로부터 납부 받은 기술료는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9조에 근거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연구개발 재투자(ETRI가 다른 연구개발사업으로 재투자) ▲출연처 반납(기금관리기관인 IITA로의 반납 후 →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편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본 위원이 ETRI가 이렇게 기술 이전한 22개 기술에 대해, 해당 업체로부터 납부 받은 기술료 34억 7,315만 5,000원의 사용처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납부된 기술료의 39%인 약 13억원을 ▲'연구개발 재투자'로, 납부된 기술료의 36%인 약 12억원을 ▲'출연처로의 반납'이, 납부된 기술료의 25%인 약 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표-4 > ERTI의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 : 납부된 기술료 사용 현황

사 용 처	기술료 납부액 총 34억 7,315만 5,000원 중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인센티브)	13억 5,618만 3,000원 (39%)
연구개발 재투자	12억 5,084만원 (36%)
출연처 반납	8억 6,613만 2,000원 (25%)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본 위원회는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해 명시된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9조(기술료의 사용 등)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번 ETRI의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개발의 경우, 납부 받은 기술료가 해당 기술을 업체로 이전을 해서 상용화에 따라 받은 기술료(경상 기술료)보다는, 대부분(94.2%)이 상용화와 관계없이 기술 이전 시 ETRI와 업체간 협약에 의해 납부 받은 기술료(착수 기본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임.
- 즉, 본 위원회는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원(ETRI 직원)에게 해당 기술의 상용화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기술 이전으로 납부 받은 ‘선금’ 격인 ‘착수기본료’가 대부분인 기술료를, ‘기술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듦.
- 장관은 해당 기술을 통한 상용화(제품화)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 받은 기술료(착수기본료)를 기술 개발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물론 본 위원회는 해당 기술 이전에 따라 업체로부터 납부 받은 기술료를, 기술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목적을 잘 알고 있음. ETRI는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당근’을 내걸어 더욱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것임. 아울러 ‘인센티브 지급’이 기술 개발 참여 연구원들의 ‘직무 중 발명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짙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당근(인센티브, 보상금)’이, 해당 기술을 이용한 상용화(제품화)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드는 바, 본 의원은 기술료 사용 - 착수기본료 사용 - 에 대한 ETRI 차원 그리고 부처 차원의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은 밝혀주시기 바람.
- 본 위원회는 2007년 10월 현재, 이전된 22개 기술로 인해 ETRI가 납부 받은 기술료가 34억 7,315만 5,000원이지만 ▲아직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업체가 존재하고 ▲그 기간도 크게는 몇 년까지 남아 있어, 기술료가 현재의 금액에서 멈추지는 않고 약간 늘어나 기술료 납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로 약 40억원(누적임)의 기술료가 납부될 것으로 예상됨.
- 장관은 앞으로 납부 예정인 기술료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해간 업체를 대상으로 상용화(제품화)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ETRI의 '장애인' 을 대상으로 2년 연속 벌린 추악한 사기극

- 본 위원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 문의를 하자, 관계자는 ETRI의 보도자료가 각종 언론매체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이 기사를 보고 많은 장애인들이 ETRI로 전화를 해, 언제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신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인지 문의전화와 감사전화가 줄이었다고 자랑스레 밝히기까지 한 바 있음.
- 이후 본 위원실에서 'ETRI'라는 정부출연기관이 연구비(기술개발비)를 지원해서 개발된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ETRI가 지난 2년 동안(2005년, 2007년) 4월 20일 '장애인 날'만 되면 그토록 'ETRI의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이 정보격차를 해소시키고, 장애인 복지에 도움'을 주었다고 밝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입법부 차원에서 예산상 혹은 정책상 도움 될 것은 없는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자, 문제의 보도자료를 만든 ETRI 홍보실에서 전화가 왔었음.
- ETRI 관계자는 '장애인 날'을 기념해서 기자분들이 먼저 장애인 관련 기사거리를 요청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보도자료를 만들게 된 것이라며 다른 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본 위원은 설사 언론 쪽에서 먼저 그렇게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장애인 대상으로 한 사업을 가지고,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 자체를 우롱하는 보도자료는 절대로 만들지도 배포하지도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함. 이것은 ETRI가 2005년과 2007년 2년 동안 196만 장애우(2006년 12월 말 현재,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수입)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임.
- 아울러 본 위원실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ETRI'는 '기술개발을 하는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기술개발은 ETRI에서 하되, 그 기술의 상용화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술을 (ETRI로부터) 받아서 (상용화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타 부처로 상용화가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어이없는 자세를 가감 없이 보여주었음.
- 물론 본 위원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 사업 역시 주무부처 겸인 '보건복지부'와 면밀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됨. 그렇다고 이미 ETRI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와 관련되어서는 이것을 뜬금없이 타 부처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본 의원은 이번 2005년에 이은 2007년 ETRI의 대국민사기극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음을 장관께 고백하고 싶음.

5. '디지털로 하나 되는 희망한국' 은 오지 못할 미래인가?

-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수'는 2004년, 161만 명에서 → 2005년, 177만 명 → 2006년, 196만 명 → 2007년 205만 명으로, 점점 증가 추세임.

< 표-5 > 등록 장애인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현재	비고
장애인 수	약 161만 명	약 177만 명	약 196만 명	약 205만 명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현황 中

(자료출처 : 2007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늘어만 가는 장애인 수를 생각해 볼 때, 장관이나 본 의원이나 잠재적 장애인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장관께서 『2007년 연두업무보고』에서 '디지털로 하나 되는 희망한국'을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그저 씁쓸하기만 함.
- 정통부와 과기부가 그간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에 투입된 예산 1,957억 4,300만원 (이 중 정부 부담은 1,685억 5,300만원)은 다름 아닌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를 장관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임.

6. '반토막 난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 투입예산

- 무려 보건복지부 2008년 장애인 복지 예산의 28.7%

- 또한 정통부가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개발에 투입된 예산 1,957억 4,300만원은, 장애인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2008년 한해 예산의 '장애인 복지 예산' (예정)6,824억원의 28.7%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표-6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 현황

구 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	장애인 1인당 복지 예산
2006년	4,999억	281,179원
2007년	6,173억	313,814원
2008년	(예정) 6,824억	약 332,377원

(자료출처 : 2007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본 위원은 만약 정통부에서 그리고 과기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개발에 투입된 예산 1,957억 4,3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반 토막도 못 낼 사업으로 만들 것을 예상했었다면, 보건복지부로 돌려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거나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장애인 LPG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의 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

7. '반토막 난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 투입예산

- 등록장애인 1인당 무려 약 95,000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

- 사실,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개발에 투입된 예산 1,957억 4,300만원은 2007년 6월 현재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약 205만 명(2,052,622명)에게 1인당 약 95,362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임을 감안한다면, ETRI의 사기극을 하나하나 지적하기란 더욱 쑥스러우만 함.

8. 그래도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은 계속되어야 한다! 쭉~~욱

- 본 위원은 이번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 가고 싶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장관도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실 것이라 판단됨.
- 물론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을 할 때 ▲정확한 수요조사와 ▲이미 개발된 기술은 아닌지, 시장에서 상용화가 된 기술은 아닌지 중복검사와 ▲기술 이전이 예상되는 업체들과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 등 좀더 정교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본 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을 정비해서 더욱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때 일반인과의 '격차'를 느낄 수 없도록 장관께서 더욱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차 무시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멋대로 고시한 우편요금 감액을 !!
이용자는 1,000억원 더 ‘부담’ 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더 ‘이익’ 내고**

□ 들 어 가 며

- ‘우편요금’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우편법』 제26조의2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우편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편물 발송 시 감액이 되는 우편물(감액대상 우편물)은 우편법 제85조에 근거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로 구성되는데 ‘정기간행물(ex, 잡지, 신문 등)’과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여유우편물’ ‘의정활동보고서’ ‘홍보우편물’ 등이 해당됨.

□ 문 제 점 & 질 의

1. 절차 무시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멋대로 고시한 우편요금 감액을 !!

- 본 위원은 최근 4년간 즉, 2004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우편물을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우편요금이 ▲변동(우편요금 감액을 조정)되었는지 ▲조정 되었다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었는지 그리고 ▲조정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정이 되었는지 분석해 보았음.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은 제4조는 우정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5조에서는, 동법 제4조에 근거해 설치된 ‘우정사업운영위원회’가 ‘우편요금·우편환요금 및 우정역무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운영위원회운영세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세칙 제8조에서는 우편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우편요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우편요금 조정(개편)이 있을 경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근거 ‘우정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거나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소관 ‘우편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우편요금심의위원회’가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보고를 해 → 고시를 개정해 우편요금 감액제도가 개편되는 절차임.
- 그러나 2004년 이후 2007년 상반기까지 우편요금 감액제도 개편은 총 4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표-1 > 우편요금 감액제도 개편 현황

우정사업운영위원회 (혹은 우편요금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요금 감액율 개정 고시일	우편요금 감액율 고시 번호
개최 안 됨 : 개최 없이 감액율 고시됨	2003년 7월 16일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3년-27호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3년-28호
개최 안 됨 : 개최 없이 감액율 고시됨	2004년 2월 23일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4-3호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4-4호
2005년 5월 4일 우정사업운영위원회 개최 및 심의함	2005년 5월 16일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5-15호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5-16호
2005년 5월 4일 우정사업운영위원회 개최 및 심의함	2005년 12월 1일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5-44호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5-45호

(자료 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이 중 법이 정한 절차대로 감액제도가 개편 된 것은 단 2차례로, 나머지 2차례는 우편요금에 관한 조정을 심의하는 ‘우정사업운영위원회’ 혹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소관 ‘우편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바로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를 통해 개정이 이루어져 감액제도가 개편 된 것으로 드러남.

- 즉, 2차례나 특례법상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우편요금 감액제도가 개편 된 것인 바, 장관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혹은 ‘우편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바로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를 통해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개편해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상 우정사업운영위원회나 우편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는 ‘개정사항이 경미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했다고 밝히고 있음.
- 본 위원은 우편요금 감액제도 개편과 관련되어 개정사항이 아무리 경미해도 ▲법상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리고 ▲다수의 이용자가 우편요금 감액을 이용해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만큼, 더더욱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우편요금 감액제도 개편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최소 2% ~ 최대 15%까지 ‘이득’

Vs. 이용자는 최소 2% ~ 최대 15%까지 ‘손해’

- 본 위원은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우정사업본부장 멋대로 고시를 통해 우편요금 감액제도가 개편된 것에 대해서는 장관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 생각됨.
- 더욱 문제는, 물론 반드시 우정사업본부는 특례법에 명시된 대로 절차를 갖춰 우편요금 감액제도가 개편되어야 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감액제도를 개편한 것도 모자라, 이러한 ‘편법적인 감액제도 개편’이 우편요금 감액 제도를 이용해 ‘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용자’에게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이들에게서 우편요금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사업본부’에게는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 것으로 드러남.
- 본 위원은 ‘2004년 1월 1일 당시 우편물별로 적용이 되었던 감액율’과 ‘2007년 6월 현재 적용 중인 감액율’을 비교해 보았음.
- 그 결과, 우정사업본부가 일부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율을 인상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준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감액율을 인상하거나 감액의 조건을 세분화 한 것은 분명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이용해 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용자에게는 금전적으로 발송비용을 줄일 수 있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음.

그러나 원래는 우정사업본부가 이용자의 우편물 발송 시 마땅히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이용자’는 감액을 더 받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더 제공해 줌 더 감액을 받는 것이고, ‘우정사업본부’는 이용자가 우편물 발송 시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이용자 자신의 노동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우편물 발송 시 제공해야 될 서비스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절약’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요금 감액율을 인상하거나 감액 조건을 세분화한 것이, 우정사업본부가 말하고 있는 대로 ‘일방적으로’ ‘이용자’만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량우편물의 경우, 2004년 1월 1일 대비 2007년 6월 현재, 감액율이 최소 5% ~ 최대 6%까지 감액율이 인하여, 이용자는 그만큼 ‘부담’이 증가한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그 만큼 ‘이득’이 증가한 것이며 ▲홍보우편물의 경우, 2004년 대비 최소 5% ~ 최대 15%까지 감액율이 인하여되었으며 ▲정기우편물의 경우, 2004년 대비 최소 2% ~ 최대 11%까지 ▲서적우편물의 경우, 최소 2% ~ 최대 15%까지 감액율이 인하여 된 것으로 나타남.

< 표-2 > 감액 대상 우편물의 감액율 조정 현황

구 분	2004년 1월 1일 당시 적용한 감액율 Vs. 2007년 6월 현재 적용 중인 감액율 비교	비 고
다량우편물	2004년 대비 2007년 현재 최소 5% ~ 최대 6%까지 감액율 인하	이용자는 최소 5% ~ 최대 6%까지 부담률 증가
홍보우편물	2004년 대비 2007년 현재 최소 5% ~ 최대 15%까지 감액율 인하	이용자는 최소 5% ~ 최대 15%까지 부담률 증가
정기우편물	2004년 대비 2007년 현재 최소 2% ~ 최대 11%까지 감액율 인하	이용자는 최소 2% ~ 최대 11%까지 부담률 증가
서적우편물	2004년 대비 2007년 현재 최소 2% ~ 최대 15%까지 감액율 인하	이용자는 최소 2% ~ 최대 15%까지 부담률 증가

(자료 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즉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요금 감액율을 인하여하면 → ‘우정사업본부’의 수익은 늘어나지만 → 반면 우편요금을 깎아주는 효율이 적어지게 되어, ‘이용자’의 부담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임.

3. 2004년 대비 2006년, 비슷하게 우편물 발송해

우정사업본부는 약 1,000억원 더 '이득' 보고 Vs. 이용자는 약 1,000억원 더 '손해' 나고

- 본 위원은 이렇듯 단순히 '2004년 대비 2007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감액을 %'를 비교해 본 것만으로도 '우편요금 감액제도 개편'이 우정사업본부에게는 금전상의 '이득'을 이용자에게는 금전상의 '손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 표-3 > 우편요금 감액을 통해 발송된 우편물 현황 (단위 : 천통,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말	합 계
정기간행물	통 수	519,844	525,249	490,267	242,313	1,777,640
	금 액	77,231	88,280	94,453	48,855	308,819
다량우편물	통 수	2,003,454	2,011,974	2,115,785	1,019,815	7,151,028천 통
	금 액	332,913	380,797	441,364	225,844	1,380,918백만원
홍보우편물	통 수	415,274	331,557	321,082	157,328	1,225,241
	금 액	93,606	88,490	96,803	49,453	328,352
비영리 민간단체우편물	통 수	15,057	17,187	20,499	13,352	66,095
	금 액	2,730	3,421	4,142	2,839	13,132
서적우편물	통 수	44,293	46,423	44,192	22,031	156,939
	금 액	16,132	19,406	17,805	8,975	62,318
여유우편물	통 수	677	0	557	54	1,288
	금 액	221	0	215	21	457
의정활동보고서	통 수	9,758	6,215	8,646	7,405	32,024
	금 액	1,030	697	1,064	953	3,744
계	통 수	3,008,357	2,938,605	3,001,028	1,462,298	10,410,288천 통
	금 액	523,863	581,091	655,846	336,940	2,097,740백만원

(자료 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이를 구체적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어느 정도' 금전상의 이득을 얻는지 그리고 이용자는 '어느 정도' 금전상의 손해를 보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았음.
-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42개월간, 우편요금 감액을 통해 발송된 우편물은 약 104억 통으로, 이용자들이 부담한 우편요금만 해도 약 2조 977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량우편물'의 경우,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42개월간 약 71억 통이 발송되었는데, 발송비용만 약 1조 3,809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문제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량우편물’의 경우 2004년 약 20억 통을 발송할 때 이용자들이 부담한 비용이 약 3,329억원인 반면, 2년이 지난 2006년에 거의 같은 통수(약 21억 통)를 발송할 때 이용자들이 부담한 비용은 약 1,000억원이 증가한 약 4,4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즉,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기본요금’이라 할 수 있는 우표 값 인상분을 반영하더라도 2004년 대비 2006년 약 1,000억원의 비용을 이용자들이 더 부담(우정사업본부로서는 더 이익인 셈임)한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2004년 한 해 동안 발송된 다량 우편물은 약 20억 통으로, 이용자들이 부담한 발송비용만 해도 약 3,329억원임. 2007년 상반기 동안에만 발송된 다량 우편물이, 2006년 한 해 동안 발송된 다량 우편물의 절반인 약 10억 통이지만, 발송 비용은 2006년 발송비용의 절반(약 2,206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약 2,258억원인 것으로 나타난 바,
- 이는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요금 감액요율을 이용자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조정을 했는지, 우정사업본부한테는 얼마나 더 이득이 되게 조정을 했는지 단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라 할 수 있는 것임.

4.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감액 통해 약 1,000억원 더 ‘이득’ 봤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622억원 ▲2005년 66억원 ‘적자’

- 이렇게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이용자들한테 더욱 불리하게 조정해 우정사업본부는 ‘다량우편물’에서만 2004년 대비 2006년 약 1,000억원의 이득을 더 냈음에도 불구하고
- ‘우편 부분’의 경영상태는 ▲2004년 ‘우편 부분 수입’이 1조 7,259억원인 반면 ‘우편 부분 지출’은 1조 7,881억원으로 ‘지출’이 622억원 더 많았으며 ▲2005년의 경우 ‘우편 부분 수입’이 1조 9,098억원이 반면 ‘우편 부분 지출’은 1조 9,164억원으로 역시 ‘지출’이 66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4 > 우편 분야의 수입 및 지출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우편 분야 수입 (A)	1조 7,259억	1조 9,098억	2조 933억	(예상) 2조 3,385억
우편 분야 지출 (B)	1조 7,881억	1조 9,164억	2조 27억	(예상) 2조 3,105억
C = A - B	- 622억	- 66억	+ 906억	(예상) + 280억

(자료 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즉, 우정사업본부로서는 2004년과 2005년은 사기업으로 치면 한해 장사해 종업원 월급도 못주는 상태가 될 만큼(▲2004년에는 622억원 ▲2005년에는 66억원 ‘적자’임) 엉망으로 경영을 한 것임.
- 이러한 적자 규모는 우정사업본부가 ‘우편 분야’에서 얼마나 방대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바,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5. 선거우편물과 우편요금 감액을 인하여 흑자를 이끌어가는 우정사업본부

- 그나마 2006년에 들어와서는 선거우편물 발송으로 ‘지출’보다(2조 27억원) ‘수입(2조 931억원)’이 906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2007년에도 우정사업본부는 280억원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본 위원은 이러한 ‘흑자’가 선거우편물 이 발송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선이 있는 올해 그리고 총선이 있는 내년에 ‘흑자’가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임.
- 본 위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우정사업본부에게 유리하게 조정하지 않았더라면, 우편 부분의 적자 규모는 ▲2004년 622억원 ▲2005년 66억원이 아니라 더욱 커졌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의 906억원 흑자 역시 그나마 우편요금 감액제도 개편으로 나타난 결과라 여겨지는 바, 장관은 본 위원의 의견을 동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6. 우편요금 감액제도 개편 시 이용자의 의견 반영되도록 해야

- 발송되는 우편물 통수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이용해 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용자의 수’는 우편요금 감액제도 개편에 따른 변동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 현실임.
- 즉,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는 거의 ‘고정’이라는 것임. 이런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개편해 2004년 대비 2006년 거의 비슷한 통수의 우편물을 보내고도 우정사업본부는 약 1,000억원의 이득을 더 내고, 이용자는 약 1,000억원을 더 부담하게 하고 있는 것임.
- 본 위원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우편요금 감액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감액을 조정 시 좀 더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며, 이 모든 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새주소 시행 된 후 6개월간

우정사업본부 자체 발송 '새주소' 우편물, 고작 9.2%

□ 들어 가 며

- 우리나라 주소제도는 '지번방식'으로, 지번방식은 ▲불합리한 지번배열순서로 순차적으로 해당 위치를 찾기 힘들고 ▲같은 지번 내 많은 가옥이 존재하는 경우 건물위치를 개별화 하기가 힘들고 ▲하나의 본번에 다수의 부번이 존재하고 ▲한 건물에 다수의 지번 존재로 대표지번 선정이 혼란스럽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옴.
- 더욱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이러한 방식을 채택해 왔고,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 주소제도를 개편하고,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음.
- ▲위치정보 기능을 상실한 지번제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꿈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국제 표준을 채택하고 ▲물류 혁신 및 유비쿼터스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06년 9월 국회에서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통과되고 →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게 됨.
-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로 표시해 주소로 사용하게 되는 것임.

□ 문 제 점 & 질 의

1. 새주소 시행 된 후 6개월간 '지번주소' 로 작성된 우편물이 99.96% 차지

- 도로명 주소(이하 : 새주소) 시행에 따라 현 '지번주소'와 '새주소'의 병행 사용이 예상됨.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접수, 발송, 배달 등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타 어느 부처·기관보다 '도로명 사업'과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우정사업본부는 법 시행 전인 2007년 3월 31일 우정사업본부 각 팀에 ‘새주소 표기 우편물 처리 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
- ‘새주소’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로, 현재는 ▲‘새주소’만으로 표기된 우편물 ▲‘새주소’와 ‘지번주소’가 병기된 우편물 ▲‘지번주소’만으로 표기된 총 3종류의 우편물이 전국 우체국 창구를 통해 접수되어 → 발송 → 배달되고 있음.

<표-1> 각 체신청으로 접수된 우편물 현황(2007년 4월 ~ 9월까지)

구 분	‘새주소’만 표기된 우편물	‘새주소’와 ‘지번주소’가 병기된 우편물	‘지번주소’만 표기된 우편물
서울 체신청	523,153통 (0.04%)	4,315,967통 (0.36%)	1,181,845,266통 (99.59%)
부산 체신청	72,361통 (0.03%)	557,461통 (0.2%)	276,447,052통 (99.77%)
충청 체신청	56,118통 (0.03%)	298,121통 (0.14%)	210,933,149통 (99.83%)
전남 체신청	38,621통 (0.03%)	197,243통 (0.15%)	135,636,465통 (99.83%)
경북 체신청	94,447통 (0.05%)	489,352통 (0.26%)	190,683,793통 (99.69%)
전북 체신청	23,438통 (0.03%)	56,651통 (0.07%)	75,616,311통 (99.89%)
강원 체신청	25,755통 (0.04%)	63,136통 (0.09%)	69,033,526통 (99.87%)
제주 체신청	11,777통 (0.04%)	80,059통 (0.38%)	20,917,705통 (99.56%)
합 계	845,670통 (0.04%)	6,057,990통 (0.28%)	2,160,877,403통 (99.68%)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그러나 새주소 시행 6개월 동안(2007년 4월 5일 ~ 9월 30일) 각 체신청으로 접수된 우편물 중 ▲‘새주소’만으로 표기된 우편물이 약 84만 통으로 0.04% ▲‘새주소’와 ‘지번주소’가 병기된 우편물이 약 605만 통으로 0.28% ▲‘지번주소’만으로 표기된 우편물이 약 21억 통으로 99.68%인 것으로 조사됨.
- 즉, 1만 통 중 무려 9,968통이 ‘옛주소’인 ‘지번주소’로 표기되어 우편물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장관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새주소 시행 된 후 6개월간 우정사업본부 자체 발송 '새주소' 우편물, 고작 9.2%

- 새주소가 시행된 후 6개월간(2007년 4월 5일 ~ 9월 30일), 우정사업본부가 각 기관과 고객 등을 대상으로 발송한 홍보 등의 우편물 중 ▲'새주소'만으로 표기된 우편물이 0.3%(12,417통) ▲'새주소'와 '지번주소'가 병기된 우편물이 8.9%(394,867통) ▲'지번주소'만으로 표기된 우편물이 90.8%(4,007,682통)인 것으로 나타남.

< 표-2 > 우정사업본부가 자체 발송한 우편물 현황(2007년 4월 5일 ~ 9월 30일까지)

구 분		'새주소'만 표기된 우편물	'새주소'와 '지번주소'가 병기된 우편물	'지번주소'만 표기된 우편물	소 계
우 편 분 야	수 량	8,526 통	306,635	2,021,072	2,336,233
	비 율	0.4%	13.1%	86.5%	100%
금 용 분 야	수 량	3,891	88,234	1,986,610	2,076,442
	비 율	0.2%	4.2%	95.6%	100%
계	수 량	12,417	394,867	4,007,682	4,412,675
	비 율	0.3%	8.9%	90.8%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즉, 새주소가 시행 된 후 6개월간, 우정사업본부가 기관과 고객 등을 대상으로 발송한 홍보 등의 우편물 중, 새주소('새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표기 한 우편물 포함)로 발송된 우편물이 100건 중 9.2통이라는 것임.
- 본 의원은 새주소 도입으로 어느 타 부처보다 새주소 우편물을 바로 현장에서 취급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쇼핑 등과 관련해 자체 홍보물을 발송할 때 '새주소'를 표기해 발송하는 우편물이, 전체 우편물의 9.2%만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본 의원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 대해서 만이라도 국민 홍보 차원에서 '새주소'를 표기해(혹은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해) 발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 덧붙여서 우편물을 배달하시는 분들께 지급되는 PDA도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주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정통부 산하기관, 홈페이지상 '새주소' '미표기' 2개 기관

- 부처 차원에서 보내는 홍보물에 대해서 '새주소' 참여율이 지극히 저조하다 보니, 정통부 산하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기관의 주소에 대해 '새주소'로 표기되지 않고 '지번주소(옛주소)'로 표기된 기관이 2개 기관만 있는 것이 오히려 생소하기 까지 함.
- 국민들은 기관에 대해 궁금해 하고, 기관이 별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 궁금해 할 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이 기관의 홈페이지라고 할 때, 기관의 홈페이지가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 즉, 새주소를 표기 하지 않고(혹은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표기 하지 않고) - 새주소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지번주소'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안 될 것이라 여겨짐.

< 표-3 > 정통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상 기관 주소 표기 현황

기관명	지번주소(옛주소)	새주소	비 고
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홈페이지에 '지번주소'와 '새주소' 모두 표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서울시 강서구 공항로 188	홈페이지에 '새주소'만 표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번지 IT벤처타워	서울시 송파구 증대로 135	홈페이지에 '지번주소'만 표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서울시 중구 무교동 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홈페이지에 '지번주소'와 '새주소' 모두 표기함
한국전파진흥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 IT 벤처타운 서관 17-18F	서울시 송파구 증대로 135	홈페이지에 '지번주소'만 표기함
한국인터넷진흥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398 3층	홈페이지에 '새주소'만 표기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	홈페이지에 '새주소'만 표기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2층	서울시 종로구 주시경길 28	홈페이지에 '지번주소'와 '새주소' 모두 표기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9-2	서울시 송파구 증대로 113	홈페이지에 '지번주소'와 '새주소' 모두 표기함

(자료출처 : 정통부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 검색일 : 2007년 19월 16일)